

1. 개정이유

약물운전의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불응 시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864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측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혈액이나 소변 등을 채취한 경우 그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처분 절차를 현행 음주운전 처분 절차와 같이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방법(안 제27조의2)

음주측정을 위하여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감정 의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약물측정의 방법·절차 규정(안 제28조의2)

약물운전의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불응 시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864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약물측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물측정 및 간이시약검사 등의 대상자 선정 절차

차 및 약물측정 및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한 소변 또는 혈액, 타액 등의 채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함

다.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절차 마련(안 제93조, 별지 제84호의2)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음주운전 처분 절차와 같이 구체적인 처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약물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혈액을 채취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할 것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직선보행, 회전 및 한 발 서기 등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3. 혈액 등 채취: 혈액,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서기 등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 행태 및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관찰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직선보행, 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할 것

2. 경찰공무원이 현장관찰 및 상태 평가 결과,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할 것

3. 혈액 등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등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등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간이시약검사로 측정되지 않았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의심되어 운전자가 혈액 등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 소변 등의 시료

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이다.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3조제5항 단서 중 “법 제44조”를 “다만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또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약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로 한다.

별지 제8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적 발 일시·장소	20 . . . :		측 정 일시·장소	20 . . . :		
약 물 경 위	약물 측정 결과	약물 사용 동기	약물의 종류 및 약물량	운전 동기		
약 물 운 전 거 리	출 발 지 점	목 적 지 점	단 속 지 점	단속지까지의 거리		
현 장 관 찰	운전 행태	◦지그재그 운전 ☐ 예 ☐ 아니오 ◦야간 전조등 미점등 ☐ 예 ☐ 아니오 ◦도주 ☐ 예 ☐ 아니오 ◦보도·상가 등 돌진 ☐ 예 ☐ 아니오 ◦역주행 ☐ 예 ☐ 아니오 ◦기타()				
	운전 자 혈색 등	◦창백함 ☐ 예 ☐ 아니오 ◦붉음 ☐ 예 ☐ 아니오 ◦눈충혈 ☐ 예 ☐ 아니오 ◦동공확장 ☐ 예 ☐ 아니오 ◦발음 부정확 ☐ 예 ☐ 아니오 ◦멍 자국 ☐ 예 ☐ 아니오 ◦주사기 자국 ☐ 예 ☐ 아니오 ◦특이한 냄새 ☐ 예 ☐ 아니오 ◦기타()				
	태도	◦과도한 흥분 ☐ 예 ☐ 아니오 ◦응답회피 ☐ 예 ☐ 아니오 ◦대화불가 ☐ 예 ☐ 아니오				
현 장 평 가	보행· 서기 상태	◦직선보행 ▲선 이탈 ☐ 없음 ☐ 1회 ☐ 2회 ☐ 3회이상 ▲넘어짐 ☐ 없음 ☐ 1회 ☐ 2회 ☐ 3회이상 및 회전 ▲비틀거림 ☐ 없음 ☐ 1회 ☐ 2회 ☐ 3회이상 ▲보행 어려움 ☐ 중단 ▲평가불가 ☐ 중단 ◦한 발 서기 ▲발이 바닥에 닿음 ☐ 없음 ☐ 1회 ☐ 2회 ☐ 3회이상 ▲서기 어려움 ☐ 중단 ▲흔들림 ☐ 없음 ☐ 1회 ☐ 2회 ☐ 3회이상 ▲넘어짐 ☐ 중단 ▲평가불가 ☐ 중단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 도						
면허취소 고지			운 전 자 의 건 진 술			
귀하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및 소변 채취를 고지 받아 이에 동의합니다. (운전자 별도진술)			
					작 성 자	
					경찰서 과 계(파출소)	
					제주특별도지사 자치경찰단	
20 . . . 계 급 : 성 명 : (인)			20 . . . 성 명 : (인)			
○ ○ 경 찰 서 장(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나. (생 략) <u><신 설></u> 2.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혈액을 채취한 경우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할 것</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28조의2(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직선보행, 회전 및 한 발 서기</u>

등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3. 혈액 등 채취: 혈액,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서기 등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 행태 및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관찰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직선보행, 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할 것

2. 경찰공무원이 현장관찰 및 상태 평가 결과,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할 것

3. 혈액 등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등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등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

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간
이시약검사로 측정되지 않
았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의심
되어 운전자가 혈액 등 채
취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실시
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
의 의료기관에서 혈액, 소
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
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
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
찰청장이 정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
분 절차) ① ~ ④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
분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

⑤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음)

(5)-----

----- . ----- 법 제44
조 또는 제45조(약물의 영향으
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또
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약물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